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19.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 제안이유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 시흥시가 2019. 5. 20.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 관련 조항 개정(안 제3조)

나. 협의회 사무소 위치 및 회의 관련 조항을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 제9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중 경기도 시흥시가 2019. 5. 20. 탈퇴함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 제67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2019. 8. 28.)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시흥시 삭제(안 제3조)

○ 사무소의 위치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

○ 현행 협의회 운영 방식에 맞게 내용 정비(안 제9조제5항)

- 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를 부천시로 이관한다는 내용 삭제

다. 종합 의견

○ 안 제3조는 2019. 5. 20.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를 협의회 구성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부천시에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개정한 것은 사무소 위치 규정의 잦은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9조제5항에서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협의회의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1993. 9. 25. 설립되어 우리구는 2000. 12. 5. 가입하였으며 2019. 5. 20. 경기도 시흥시가 탈퇴함에 따라 현재 협의회 가입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으로 총 9개 자치단체임.

○「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제158조에서는 협의회 규약 변경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탈퇴한 협의회 구성 명단에 따라 규약을 정리하고 협의회 정기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개정한 규약안을「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반현황 1부.
2. 최근 3년간 협의회 안건처리 결과 1부.
3. 관계 법령 1부.

붙 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반현황

❑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 **구성목적**

○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화 도모

❑ **구성일시** : 1993. 9. 25.

❑ **구성단체** : 부천시,광명시,김포시,계양구,서구,강화군,강서구,양천구,구로구

❑ **조 직** : 회장 1인, 부회장 1인(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인접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수립·변경, 건축·토지이용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택단지·공업단지 조성
○ 행정구역 경계관리 및 협의·조정,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
○ 인접지역 간 연결 버스노선 신설, 연장 등 교통망 변경
○ 도로망 신설, 변경, 확장, 포장,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감시, 단속,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 **연 혁**

○ 1993. 9.25 : 규약제정 및 구성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부평구,구로구,양천구,강화군
○ 1994.11.14 : 구로구, 양천구 탈퇴(제1차 규약개정)
○ 1996. 5.17 : 강화군, 계양구 가입(제2차 규약개정)
○ 1999. 7.29 : 강화군 탈퇴(제3차 규약개정)
○ 2000. 12.5 : 강서구 가입(제4차 규약개정)
○ 2007. 2.20 : 인천광역시 서구 및 강화군 가입(제5차 규약개정)
○ 2009. 2.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입(제6차 규약개정)
○ 2011. 4. 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입(제7차 규약개정)
○ 2016. 8.26 : 부담금 근거 조항 마련(제8차 규약개정)
○ 2019. 3.13 : 부평구 탈퇴, 부담금의 회장단체 예산편입 운영(제9차 규약개정)

붙 임 **최근 3년간 협의회 안건처리 결과**

회 차	개 최 일	안 건 명	처리현황
제59회	2017.2.22.	■ 2017년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장자치구→공통)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후 차기 회의시 확정키로 함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 공동대응 (강서구→부천, 광명, 구로) ■ 정당정책 현수막 관리 공통기준 협의 (부천시→공통)	수정합의 합 의 수정합의
제60회	2017.5.24.	■ 2017년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안 재협의 (회장자치구→공통) ☞ 사업발굴 시까지 2017년 연간사업계획 미수립 ■ 안양천 수질개선 촉구 건의 (양천→ 구로, 강서, 광명, 부천, 시흥) ■ 민선6기 제4대 협의회장단 선출 (회장자치구→공통) ☞ 회장 : 양천구청장, 부회장 :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함	합 의 합 의 합 의
제61회	2017.8.30.	■ 무상귀속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 등기법 개정 건의 (부천→공통) ■ 김포·강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김포→강서) ■ 민선6기 제4대 부회장 선출(회장자치구→공통) ☞ 부회장 : 서구청장	합 의 합 의 합 의
제62회	2017.11.29	■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순회토론회 개최 건의(양천→공통)	합 의
제63회	2018.02.28	■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관련법 개정 건의 (구로→부천, 김포, 광명, 계양, 서구, 양천, 강서, 구로)	합 의
제64회	2018.11.27.	■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양천→부천, 김포, 광명, 계양, 서구, 양천, 구로, 강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방안 논의 (회장자치구→공통) ■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경제성 향상 공동 노력(김포→서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동대응 건의 (구로→부천, 광명, 구로, 강서) ■ 민선7기 제1대 협의회장단 선출(회장자치구→공통) ☞ 회장 : 구로구청장, 부회장 : 서구청장	합 의 합 의 수정합의 합 의 합 의
제65회	2019.03.13.	■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 (회장자치구→공통)	합 의

회 차	개 최 일	안 건 명	처리현황
		■ 협의회 부담금 관리개선에 따른 통장발생이자 조치방안 (회장자치구→공통)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동대응 TF팀 운영 방향 (구로→부천, 광명, 구로, 강서)	합 의 수정합의
제66회	2019.05.22.	■ 민선7기 제2대 협의회장단 선출(회장자치구→공통) ☞ 회장 : 서구청장, 부회장 : 부천시장	합 의
제67회	2019.08.28.	■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회장자치구→공통)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 공동대응 (양천→부천, 광명, 김포, 계양, 서구, 강서, 양천, 구로)	합 의 합 의

붙 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